#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309

발의연월일 : 2020. 11. 13.

발 의 자 : 권명호 · 임이자 · 송언석

정희용 · 김형동 · 정진석

김기현 • 윤두현 • 한무경

양금희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공중화장실 사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공중화장실의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낙 서·기물 훼손 등의 행위에 대한 금지 등의 규정은 있으나 범죄 예방 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연 1회로 규정되어 있는 공중화장실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2개월마다 한번씩 하도록 하여 점검을 강화하고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하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여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4조제2항, 제16조의2, 제20조, 제21조제2항제3호의2 신설등)

#### 법률 제 호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점검"을 "점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연 1회"를 "2개월마다 1회"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중화장 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 치(이하 "카메라등"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2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6조의2(안전화장실 인증)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용 환경이 조성된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기준에 따라 안전화장실 인증을 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공중화장실등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공중화장실등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그 밖에 인증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20조(벌칙)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 등을 설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1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제1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공중화장실등 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시설 <u>점검</u> ) 시장·군수·	제12조(시설 <u>점검 등</u> )
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	
여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라 유지・관리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u>연 1회</u>	<u>2</u> 개월마다 1회
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	
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14조(금지행위) (생 략)	제14조(금지행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lt;신 설&gt;</u>	②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
	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이하"카메라등"
	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서는 아
	<u>니 된다.</u>
<u>&lt;신 설&gt;</u>	제16조의2(안전화장실 인증)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용 환경이 조성된 공
	중화장실등에 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기준에
	따라 안전화장실 인증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21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3. (생략)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 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공중화장실등에는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인증표시를 할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공중화장실등에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그 밖에 인증 절차 등에 필 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20조(벌칙) 제14조제2항을 위반 하여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등을 설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② -----
- \_\_\_\_\_
- -----.
- 1. ~ 3.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3의2. 제16조의2제4항을 위반하
	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공중
	화장실등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